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 | |
|----------|-------|
| 의안 번호 | 18853 |
|----------|-------|

제안연월일 : 2026. 5.

제안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심사 경과

| 의안명 | 의안번호 | 대표발의자 (제출자) | 발의일 (제출일) | 심사경과 |
|--------------------------------|---------|----------------|--------------|--|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 2204713 | 정부 | 2024.10.16. |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 (2025. 7. 18.)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 |
| | 2213388 | 이학영의원 | 2025.9.30. |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2026. 3. 24.)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 |

나.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2026. 4.

1.)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하여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으며,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2026. 4. 7.)에서 이를 심의·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첫째, 현재 재이용수 공급은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추진되고 있어 공급 범위가 관할 구역 내 수요처에 제한되고 있고, 이로 인해 지역 간 재이용수 이송과 같은 광역적 공급에는 한계가 존재함.

또한, 재이용수를 공업용수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시설 투자가 필요하나, 민간 투자 방식에 의존하는 현 구조는 수익성이 낮은 지역에 대한 투자 유인을 부족하게 하여 원활한 공급을 저해하고 있음.

이에 국가가 직접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이용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지역 간 효율적인 물 분배를 가능하게 하며, 극한 가뭄 등 물 부족 상황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둘째, 환경적·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인가 취소를 개선하기 위하여,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또는 온배수 재이용사업자에 대한 인가 취소 요건 중 시설 설치 공사 시작 예정일부터 1년이 지나도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공사완공 예정일부터 1년이 지나도 공사를 완공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를 고려하도록 함.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재이용·공급하고 남은 하수처리수를 관할 지역 외의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에 공급하도록 공공하수도관리

청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안 제10조제4항).

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며, 대행기관이 재이용시설 설치·운영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안 제10조의2 등).

다. 시설 설치 공사 시작 예정일부터 1년이 지나도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공사 완공 예정일부터 1년이 지나도 공사를 완공하지 아니한 사유로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자에 대한 인가를 취소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를 고려하도록 함(안 제17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의 재이용의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하수도관리청에 제1항에 따라 재이용하거나 공급하고 남은 하수처리수를 관할 지역 외의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에 공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급 요청을 받은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국가의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 및 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역별 물 수요량 및 공급 가능량, 가뭄 발생 전망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

설 설치계획을 수립하거나 수립된 설치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공 및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제1항 전단 중 “공공하수도관리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공공하수도관리청”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설치승인을 받은 경우 또는”을 “설치승인을 받은 경우, 제10조의2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설치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 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설치승인 또는”을 “설치승인(제10조의2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제10조”를 “제10조 및 제10조의2”로, “공공하수도관리청”을 “공공하수도관리청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제10조의2제5항

에 따라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이하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대행기관”이라 한다)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공공하수도관리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대행기관을 포함한다), 공공하수도관리청”으로, “하고”를 “하여야 하고, 공공하수도관리청,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대행기관,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공공하수도관리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대행기관을 포함한다), 공공하수도관리청”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본문 중 “공공하수도관리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대행기관을 포함한다), 공공하수도관리청”으로 한다.

제16조 중 “공공하수도관리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공공하수도관리청”으로 한다.

제17조제4호 중 “인가를 받은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의”를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의 인가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인가를 받은 온배수 재이용사업의”를 “온배수 재이용사업의 인가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로 한다.

제21조 본문 중 “공공하수도관리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공공하수도관리청”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공하수도관리청 및”을 “공공하수도관리청,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대행기관 및”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제8호 중 “공공하수도관리청”을 각각 “공공하수도관리청,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대행기관”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의 인가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 1항에 따라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 1항에 따른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거나 수립한 설치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 1항에 따른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공 및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

제13조(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의 설치기준 등) ① 제10조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거나 제11조에 따라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의 인가를 받은 자(이하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라 한다)가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거나 온배수 재이용사업의 인가를 받은 자(이하 “온배수 재이용사업자”라 한다)가 온배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등 설계·시공업자에게 설계·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제14조(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

제13조(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의 설치기준 등) ① 제10조 및 제10조의2-----공공하수도관리청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제10조의2제5항에 따라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이하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대행기관”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4조(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

및 온배수 재처리수의 수질)

① 공공하수도관리청,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자는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이 완공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 및 온배수 재처리수의 수질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공공하수도관리청,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용도별 수질기준에 맞게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 및 온배수 재처리수를 공급하여야

및 온배수 재처리수의 수질)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대행기관을 포함한다), 공공하수도관리청

하여야 하고, 공공하수도관리청,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대행기관,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자는

② (현행과 같음)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대행기관을 포함한다), 공공하수도관리청

한다.

제15조(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의 관리) ① 공공하수도관리청,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자는 기술관리인을 두어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시공업자에게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또는 온배수 재이용시설의 관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략)

제16조(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의 보호) 누구든지 공공하수도관리청,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또는 온배수 재이용사업자의 사전 동의 없이 하·폐수처

-----.

제15조(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의 관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대행기관을 포함한다), 공공하수도관리청-----

-----.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의 보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공공하수도관리청-----

리수 재처리수 관로 및 온배수 재처리수 관로로부터 분기(分岐)하여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 및 온배수 재처리수를 이용하거나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을 변조(變造) 또는 파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인가의 취소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또는 온배수 재이용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 3. (생략)

4. 인가를 받은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의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 공사시작 예정일부터 1년이 지나도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공사 완공 예정일부터 1년이 지나

제17조(인가의 취소 등) -----

1. ~ 3. (현행과 같음)

4.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의 인가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도 공사를 완공하지 아니한
경우

5. 인가를 받은 온배수 재이용
사업의 온배수 재이용시설 설
치 공사시작 예정일부터 1년
이 지나도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공사완공 예정일
부터 1년이 지나도 공사를 완
공하지 아니한 경우

제21조(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
의 요금) 하·폐수처리수 재처
리수를 공급하는 공공하수도관
리청 및 하·폐수처리수 재이
용사업자는 하·폐수처리수 재
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기
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을 받을 수 있
다. 다만, 공공하수도관리청 및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을 받을
수 있다.

5. 온배수 재이용사업의 인가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
의 요금) -----

-----기후에너지환
경부장관, 공공하수도관리청---

재이용시설 또는 온배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한 공공하수도관리청,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또는 온배수 재이용사업자

4. 5. (생략)

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7. (생략)

8. 제14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공공하수도관리청,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또는 온배수 재이용사업자

④ · ⑤ (생략)

-----공공하수도관리청,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대행기관-----

4.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7. (현행과 같음)

8. -----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대행기관, 공공하수도관리청-----

④ · ⑤ (현행과 같음)